

산림경영지도원 직무소개

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·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·보급 업무를 수행

※ 관련근거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

✓ 직무내용

- 관할 지역 산림경영계획 수립
- 경제림육성단지 활용 및 지도
- 산주요청사업 대행
- 산주·임업인·귀산촌인 교육 및 컨설팅
- 단기소득임산물 재배·생산·유통 기술지도
- 임산물 시장성 및 경제성 등 시장조사
- 임업정보제공 및 산림소득지원사업 등 산주·임업인 지원 전반에 관한 업무

✓ 필요지식

- **조림** : 임목종자, 묘목생산·식재, 수목의 생리·생태, 산림토양, 숲가꾸기, 산림갱신, 관련지침 등
- **산림보호** : 일반피해, 수목병, 산림해충, 농약, 관련지침 등
- **산림경영** : 산림경영계획, 산림평가, 산림경영계산, 산림측정, 임목수확, 산림휴양, 관련지침 등
- **산림법규**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,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, 산림조합법
※ 시행령, 시행규칙 포함
- **산림토목** : 임도망계획, 임도환경, 임도구조, 임도설계, 임도시공, 임도 유지관리, 산림측량, 기계, 토양침식, 비탈면녹화, 야계사방, 산지사방, 특수지사방, 생태복원, 관련지침 등
- **임산가공** : 목재이학, 목재해부, 목재화학, 임산제조, 목재보존, 관련지침 등

✓ 필요기술

- 산림경영, 임산물 재배·유통, 임업금융 정보 보급 및 컨설팅 능력
- 산림현황조사 및 산림경영계획 수립 능력
- 대리경영,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계획 수립 및 사업 실행 능력
- 나무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예찰·진단·치료 능력
- 그 밖에 산림경영지도 및 보급과 관련된 사업 실행 능력